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39호, 2026. 3. 10. 공포, 2027. 3. 11.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실 및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건강보험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를 평가대상 조직인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의료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정책관등을 신설하면서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고,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보건복지부의 정원 1명(4급)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5.12.23. 공포, 2026.12.24.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비급여 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4명(6급 3명, 경위 1명)을 증원하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법률 제21351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352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의 국립대병원(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다) 관리 및 지원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교육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건복지부로 이체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지역 의료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202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지역의료인력양성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보건복지부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폐지에 따라 감축하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3급 또는 4급 정원의 상한을 고려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센터장의 직급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의 직급을 각각 3급 또는 4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의료정책실”을 “보건의료정책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보건의료정책실”을 “보건의료정책실·지역필수공공의료실”로 한다.

제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한다.

4. 의료법령 운영에 관한 사항

5. 비대면진료 관리·감독 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료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8.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9.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항제23호 및 제2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8호부터 제31호까

지를 각각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8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보건의료장비, 병상 등 의료자원의 관리·평가 및 수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6. 의료자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7.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

28.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제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0.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1. 간호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제28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지역필수공공의료실) ①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 필수의료 강화 정책의 수립 및 운영

3.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운영

4. 진료권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필수의료 기반 확충 및 필수의료 제공 개선 지원
6. 필수의료취약지 지정 및 지원
7. 필수의료 분야별 지역 완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8.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9.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및 조정
10.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11.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 및 지원
12. 국립대학병원의 진료·연구·교육 기능 육성
13. 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및 응급 의료기금의 운영
14. 재난 의료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5. 재난 의료 대비·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15조제3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중보건 의사, 보건진료원, 보건교육사”를 “보건교육사”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 중 “3급 또는 4급”을 “4급”으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중 “3급 또는 4급”을 “4급”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후단 중 “80명”을 “8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 중 “14명”을 “15명”으로, “1명”을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명(경위 1명)”을 “2명(경위 2명)”으로 한다.

제10장의2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한다.

제43조의2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직 및 정원”을 “조직”으로 한다.

제44조의4를 삭제한다.

제44조의7 및 제44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7(기금관리운용과) 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금운용관리과를 둔다.

② 기금운용관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다변화 정책 수립
 2.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다변화 관련 지침 및 규정의 제정·개정
 3.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관계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5.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 수립
 6.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기금운용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8(지역의료인력양성과) ①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지역의료인력양성과를 둔다.

②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의 총괄
3. 지역의사 양성에 관한 법령의 운영
4. 계약형 지역의사 제도의 운영
5. 지역의사 지원 제도의 운영
6.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
7.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공중보건장학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8. 공중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7항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계 “869”를 “901”로 하고, 일반직 계 “860”을 “891”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4”를 “27”로, 3급 또는 4급 이하 “830”을 “85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을 “2로” 하며, 경정 이하 “1”을 “2”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2 및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제3항제11호·제12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의 특례)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에도 불구하고 2026년 8월 19일까지는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00000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서 이체받는다.

[별표 4의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0000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899
정무직 계	3
장관	1
차관	2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4
일반직 계	889
고위공무원단	2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
3급 또는 4급 이하	856
전문경력관	5
경찰공무원 계	2
경정 이하	2

[별표 5의2]

보건복지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3조의2제1항 관련)

조직	정원
1. 보건의료정책실 1개 과	3명
2. 지역필수공공의료실 1개 과	5명
3. 보건산업정책국 1개 과	3명
4. 보건의료정책실 1개 정책관등	1명
5. 지역필수공공의료실	1명
6. 지역필수공공의료실 1개 정책관등	1명
7. 지역필수공공의료실 1개 과	7명
8. 지역필수공공의료실 1개 과	2명
9. 지역필수공공의료실 1개 과	1명
10. 지역필수공공의료실 1개 과	4명

[별표 6]

보건복지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44조의5제4항, 제44조의6제7항, 제44조의7제4항 및 제44조의8제4항 관련)

1.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4급 이하	4

2. 통합돌봄지원관(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3. 통합돌봄정책과(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5
일반직 계	5
4급 이하	5

4. 통합돌봄사업과(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6
일반직 계	6
4급 이하	6

5. 기금운용관리과(존속기한: 2029년 7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4급 이하	4

6. 지역의료인력양성과(존속기한: 2029년 7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4급 이하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하부조직) ①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과, 인사과, 사회복지 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인구· 사회서비스정책실, 사회보장위 원회 사무국, <u>보건의료정책실</u> ,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및 보건산업정책국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 ----- ----- ----- <u>보건의료정책실</u> , <u>지역필수공공의료실</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복수차관의 운영) ①· ② (생략)	제4조의2(복수차관의 운영)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차관은 <u>보건의료정책실</u> · 건강보험정책국·건강정책국 및 보건산업정책국의 소관업무 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 <u>보건의료정책실</u> <u>· 지역필수공공의료실</u> ----- -----.
제9조(인사과) ① (생략)	제9조(인사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②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u>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관리에 관한 사항</u>
제14조(보건의료정책실) ①·② (생략)	제14조(보건의료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③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 립·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 항</u>	4. <u>의료법령 운영에 관한 사항</u>
5. <u>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 제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u>	5. <u>비대면진료 관리·감독 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u>
6. <u>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 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u>	6. <u>의료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u>
7. <u>보건의료장비, 병상 등 의료 자원의 관리·평가 및 수급계 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u>	7. <u>의료기관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u>
8. <u>간호 관련 정책의 수립·조 정에 관한 사항</u>	8. <u>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 항</u>
9. <u>의료법령 운영, 의료법인 관 리 및 의료자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9. <u>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사항</u>
10. <u>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신 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u>	<삭제>
11. <u>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 항</u>	<삭제>
12. ~ 22. (생략)	10. ~ 20. (현행 제12호부터 제 22호까지와 같음)
23. <u>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조정</u>	<삭제>
24. <u>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u>	<삭제>

<u>원·적십자병원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u> 25. <u>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및 응급 의료기금의 운영</u> 26. <u>재난 의료 정책의 수립·조정</u> 27. <u>재난 의료 대비·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u> <u><신 설></u> 28. (생 략) <u><신 설></u> 29. (생 략) <u><신 설></u> 30. (생 략) <u><신 설></u> 31. (생 략) 32. ~ 40. (생 략) 제10조(사회복지정책실) ①·② (생 략)	25. <u>보건의료장비, 병상 등 의료자원의 관리·평가 및 수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u> 26. <u>의료자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27. <u>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u> 28. <u>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21. (현행 제28호와 같음) 29. <u>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제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u> 22. (현행 제29호와 같음) 30. <u>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u> 23. (현행 제30호와 같음) 31. <u>간호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u> 24. (현행 제31호와 같음) 32. ~ 40. (현행과 같음) 제10조(사회복지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27. (생 략) 28. <u>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u> 29. ~ 33. (생 략) <u><신 설></u>	③ ----- --. 1. ~ 27. (현행과 같음) <u><삭 제></u> 29. ~ 33.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지역필수공공의료실) ① <u>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u> ② <u>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③ <u>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u> 2. <u>필수의료 강화 정책의 수립 및 운영</u> 3. <u>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운영</u> 4. <u>진료권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5. <u>지역별 필수의료 기반 확충 및 필수의료 제공 개선 지원</u> 6. <u>필수의료취약지 지정 및 지</u>
---	---	--	---

	<u>원</u> 7. <u>필수의료 분야별 지역 완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u> 8. <u>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u> 9. <u>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및 조정</u> 10. <u>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u> 11. <u>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 및 지원</u> 12. <u>국립대학병원의 진료·연구·교육 기능 육성</u> 13. <u>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및 응급 의료기금의 운영</u> 14. <u>재난 의료 정책의 수립 및 조정</u> 15. <u>재난 의료 대비·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u>
제15조(건강보험정책국) ①·② (생략)	제15조(건강보험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5.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u>
제16조(건강정책국) ①·② (생략)	제16조(건강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2의2. (생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u>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u>	<u><삭 제></u>
4. <u>공중보건 의사, 보건진료원, 보건교육사</u>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4. <u>보건교육사</u> ----- ----- -----
5. ~ 31. (생략)	5. ~ 31.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u>3급 또는 4급</u> 으로 보한다.	제27조의3(센터장) ① ----- ----- <u>4급</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의3(사무국장) ①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u>3급 또는 4급</u> 으로 보한다.	제38조의3(사무국장) ① ----- ----- ----- <u>4급</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② -----

84명

④ 15명 2명

1. _____

2명(경위 2명)

2. (현행과 같음)

제10장의2 평가대상 조직
제43조의2(평가대상 조직) ① (현
행과 같음)

② ----- 조직 -----

-----.

<삭 제>

3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필수의료총괄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⑤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의 총괄
3. 필수의료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의 점검 및 이행관리
4. 필수의료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 과제의 발굴
5. 필수의료 관련 시범사업 등의 총괄 및 관리
6. 필수의료 관련 협의체 등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7.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의 재평가 및 사후관리
8. 필수의료 관련 실태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수의료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⑦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7(기금관리운용과) 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금운용관리과를 둔다.

② 기금운용관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다변화 정책 수립
2.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다변화 관련 지침 및 규정의 제정·개정
3.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관계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신 설>

- 운영
4.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기
금 관리·운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5.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
련 정책 수립
6.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
위원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민연금기금의 운
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
항
- ④ 기금운용관리과에 두는 공무
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의8(지역의료인력양성과)
- ①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
료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
항제1호에 따라 2029년 7월 31
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지역의료인력양성과를 둔다.
- ②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
한다.
-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 다.
1.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의 총괄
3. 지역의사 양성에 관한 법령
의 운영
4. 계약형 지역의사 제도의 운
영
5. 지역의사 지원 제도의 운영
6.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
7.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및 공중보건장학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8. 공중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
육·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 의료인력 양성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
다.
-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5조(한시정원) ① ~ ⑥ (생
략)
- 제45조(한시정원) ① ~ ⑥ (현행
과 같음)

⑦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삭 제>
--	-------

신·구정원대비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869	901	+32
일반직 계	860	891	+31
고위공무원단	24	27	+3
3급 또는 4급 이하	830	858	+28
경찰공무원 계	1	2	+1
경정 이하	1	2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5